

1. 개정이유

- 가. 수입이익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현행 규정은 부과·징수 체계가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
- 나. 현행 규정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시장도매인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사유와 공고 절차만을 규정하고 있어, 소명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수입이익금 부과체계 명확화 (안 제14조제1항 개정)
- 나. 시장도매인 거래제한 소명 절차 마련(안 제35조제4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관계부처 확인 완료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
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품목 및”을 “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한하며,”로 한다.

제3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“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”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4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<u>품목 및 금액산정방법</u> 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14조(수입이익금의 징수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<u>품목은 수입권공매 방식</u> 으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한하며, 금액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
1. 고추·마늘·양파·생강·참깨: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, 운송료, 보험료,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(費目)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, 보관료, 운송료,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		1. 고추·마늘·양파·생강·참깨: 해당 품목의 판매수입금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산정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된 물품대금, 운송료, 보험료, 그 밖에 수입에 드는 비목(費目)의 비용과 각종 공과금, 보관료, 운송료, 판매수수료 등 국내 판매에 드는 비목의 비용을 뺀 금액 또는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		
2. 참기름·오렌지·감귤류: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		2. 참기름·오렌지·감귤류: 해당 품목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		

금액 제35조(시장도매인의 영업) ①~④ (현행과 같음) <신 설>	자 결정시 납입 의사를 표시한 금액 제35조(시장도매인의 영업) ①~④ (현행과 같음)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라 <u>공고를 하기 전에 해당 대상자에</u> <u>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</u> <u>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</u> <u>다.</u>
---	---